삼성

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기본형,갱신형,무배당)

보험약관 [2024년 4월 개정약관]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은 사랑」이라는 컨셉 아래 고객의 사랑이 평생 이어지도록 든든한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삼성생명이 있기까지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있는 곳에는 삼성생명이 함께 하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받는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이용가이드 북

01 보험 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0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	약관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서		
	약관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설명서	
	보험약관	주계약 약관	기본계약의 내용과 특약에 준용되는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주계약& 특약)	특약약관	주계약약관에정한사항외선택기입한보장내용등 필요한사항을정한약관	
용어해설및색인등		약관 이해를 등을소비자()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관련 법규 세게 안내	

03 QR 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주계약 약관 기준)

보험 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 제한 사유

제3조(보상내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청약철회

제16조(청약의 철회)



3. 계약취소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4. 계약무효

제18조(계약의 무효)



5.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효과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6.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효과

제 12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8. 부활(효력회복)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9. 해약환급금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33조(해약환급금)



10. 보험계약대출

제 34 조(보험계약대출)



0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6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관요약서
2.	약관 이용가이드북의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 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약관 이용가이드북
3.	'목차' 를 활용하시면 주계약에 부가할 수 있는 특약 중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 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목차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주요 용어 해설의 용어해설, 약관본문 Box안의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주요 용어 해설
5.	스마트폰으로 약관 이용가이드북의 QR코드 를 인식하시면 약관 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이용가이드북
6.	'인용된 법령 내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인용된 법령 내용

06 기타 문의 사항

※ 당사 홈페이지(<u>www.samsunglife.com</u>)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거나 약관을 분실하였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 고객상담 코너에서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MY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음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MY삼성생명 계약조회, 기본계약사항, 보장내용조회, 보험계약대출,

자동이체 조회/변경, 계약변경, 계약금액 감액, 변액보험 펀드변경,

보험료 납입 등

** MY 삼성생명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MY 삼성생명

등록신청(최초 1회)을 하셔야 합니다.

☎ 콜센터 자동이체신청, 변경, 해지, 보험료 납입신청, 청약철회 접수,

1588-3114 품질보증접수, 보험계약대출신청, 각종 상담문의 등

※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한번에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One-Call-Service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한 조회업무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E-mail 서비스 고객님의 E-mail을 등록하시면 자동이체 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

등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 삼성생명 콜센터, 담당 보험설계사, 고객플라자, MY삼성생명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분쟁조정이 필요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 ·도표· 아이콘· 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보험상품명 삼성 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

(기본형,갱신형,무배당)

■ 보험상품의 종목 실손보험

01 상품의 주요 특징

● 이 상품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일반심사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력자(고연령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주기적으로 상품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 3 년단위로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재가입)해야 합니다.
- 최근의 위험률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나이, 위험률 및 의료수가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특히,인상)됩니다.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 보험상품명: 삼성 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기본형,갱신형,무배당)

1) 간편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가

간단한 심사를 통해 쉽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2) 실손의료비 피보험자의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 상품입니다.

3) 갱신형 일정 주기로 갱신되며, 갱신 시 연령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변동(특히,인상)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4) 무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자기 부담금 차감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보험의 주요 유의사항만을 요약하고 이해를 위해 대표적인 예시를 든 것으로, 반드시 관련 내용을 상품설명서나 약관으로 설명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부당금 **차감**후 지급

자기 부담금 차감

- 이 보험은 보장대상의료비에 대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 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반드시,** 가입하신 계약 약관에서 **자기부담금 차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간편실손	질병입원/상해입원	<mark>입원의료비 건당 10 만원과</mark>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의료 보험	질병통원/상해통원	통원의료비 건당 2 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0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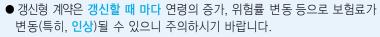


이 계약은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단, 이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03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료갱신형 이 보험은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 갱신형 계약은 주계약 명칭에 (<mark>갱신형</mark>)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 * 예시) 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기본형,갱신형,무배당)

04 실손보상형 담보 / 실손의료보험



실순형 다 이 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 하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을 **중복 가입**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5 기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1. 보장성 보험



- 이 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단, 이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병력자 보험/ 간편심사 보험



- 이 보험은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가 간단한 심사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 인당 "5 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 인당 "5 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06 기타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갱신 관련

●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 면 갱신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최초(재)가입나이 +보장내용 변경주기, 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2. 보장내용 변경주기 관련

- 이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란 계약의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주기를 말하며 3년으로 합니다.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고 재가입을 통해 재가입시점의 보장내용으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합니다. 단. 재가입시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남은 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 회사는 최초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후 재가입할 때 인수조건(재 가입기능 최고연령 등)을 설명해야 하고, 이 계약의 재가입 시점에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특히, 재가입 시점에 보장 보장내용이 축소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7 기타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1.

- 이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대해 일정부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약관상 다수보험의 처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소멸사유

●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단, 청약한 날부터 30 일 이내로 제한됩니다)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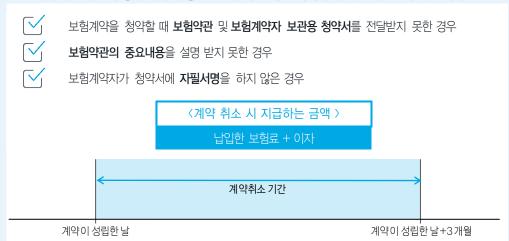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1)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
- 2)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을 포함합니다.
- *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이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03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 보험상품"에 청약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

0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판례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 다 59837 판결]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 민원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 일간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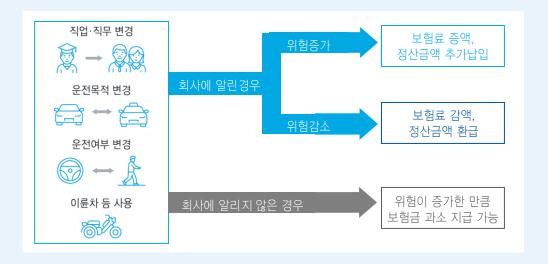
05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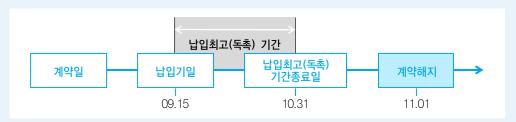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 (!)
-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14 일 이상(보험기간 1 년 미만인 경우 7 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니버설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입연체

- ①제2회이후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 ② 유니버설 보험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때

0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08 보험계약대출



이 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 내 "보험상품적용이율" - "보험계약대출이율 변동현황"에서 공시합니다.

09 보험금 청구방법 및 지급절차

1. 보험금의 청구방법



- 보험금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 (☎ 1577-4118)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우편/FAX/인터넷/모바일 접수의 경우 접수 가능 금액 등의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대표예시 〉							
구분	진단서	입·퇴 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통원 확인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재해 입증서류	공통
사망	● (사망진단서)						
장해	● (장해진단서)						
진단					● (검사결과지 등)		
입원		•				(재해관련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수술			•				
통원				•			
실손		• (입원시)	● (수술시)	● (통원시)			

※ 위표는 대표적인 예시만 나타낸 것으로 보험금 청구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절차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심사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일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 영업일 이내 입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회사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 1577-4118)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 이용가이드북 보험금 지급절차(QR 코드)로 접속하시면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장에 따라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존재할 수 있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사고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및 보험기간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01. 주요 민원사항
- 0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이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는 다소 생소한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주요 민원사항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주요 민원사항

유형 1 | 보장불가 사항 부실설명

- · A 고객은 보험설계사 B 로부터 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상해 등 모든 병원치료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듣고 보험 가입함
- ·이후,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니, 약관상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최초 안내받았던 내용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민원 제기

[유의사항]

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그 보장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모든 치료에 대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이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장이 되지 않는 사항은 보험 가입시 필수 안내사항으로 보험가입 전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시어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2 |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함

· C고객은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 D에게 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안내 받지 못했고 특히, 최종 갱신 계약 보험기간까지 납입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가입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며 민원 제기

[유의사항]

갱신형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및 의료수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 가입시 필수 안내사항으로,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장을 통해 예상되는 갱신보험료 인상액을 예시해 드리고 있습니다(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갱신보험료와는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전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꼭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이 권리안내문은 금융거래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조회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고객님에게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 드라기위한 것입니다. 저희 삼성생명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 이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 · 부당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삼성생명이 처리하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 철회(처리정지권)

- ·계약 체결 3 개월 이후부터 개인신용 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지 · 관리 · 상담, 기타 업무우투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대상 및 내용등을 특정하여 회사 대표전화(1588-3114)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ifie.com) 또는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회사는 1 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상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

· 금융회사가 신용 정보 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그거절 ·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 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 주소 ·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소개등을 위한 제공 : 이용 동의 철회, 연락 중지 요청

- · 고객님의 개인신용 정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제공 ·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님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또는 연락 중지 청구는 무료 ARS 전화(080-331-3114) 또는 저희 회사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MY삼 성생명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으며(MY 삼성생명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제공시실통보 요구

- · 고객님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객플리자 방문, 회사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최근 1년간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공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해통보요구가있는경우회사는 7일이내에 통보또는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열람 및 정정 · 삭제 청구

- · 고객플라자, 회사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이용의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 · 삭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 · 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시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정보의무료 열람 요구

· 고객은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 · 삼성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및 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개인사용 정보관리 · 보호부서 : 02-2259-7007(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1 (삼성전지빌딩))
-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약관

- 상품 목차
- 주계약 약관
 - 상황별 목차
 - 조항별 목차
- 제도성특약 약관
-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 상품 목차

주계약	
삼성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기본형,갱신형,무배당)	1
제도성특약	
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탑승부담보특약	44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4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50
부록	
[부록]약관에서인용된법령내용	52

■ 주계약 약관

삼성

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

(기본형, 갱신형, 무배당)

약관

■ 상황별 목차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보를 해당 약관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항번호는 주계약 약관 기준]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 제2조(용어의 정의)
하여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 제 16 조(청약의 철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무엇인가요	·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장이 언제 시작되나요	· 제 23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험료의 납입에	납입최고(독촉)이 무엇인가요	·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관하여	보험을 부활시키고 싶어요	·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의 보장내용을 알고 싶어요	· 제 3 조(보상내용)
	보험금은 청구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 제 19 조(계약내용의 변경등)
9131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 제 9 조(주소변경통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 제 30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험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제 20 조(보험나이 등)

■ 조항별 목차

제 1 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보장종목] 제 2 조 [용어의정의]	4 4	제 20 조 [보험나이 등] 제 21 조 [계약의 소멸] 제 22 조 [재가입]	29 29 30
제 2 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및보상하지 않는 시 《질병입원형》 제 3 조 [보상내용]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질병통원형》 제 3 조 [보상내용]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상해입원형》 제 3 조 [보상내용] 제 4 조 [보상내용]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トラ 5 6 9 9 10 13 13	제 6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3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4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25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 2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 2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 부활(효력회복)] 제 28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 29 조 [보험료의 계산]	31 31 31 31 [일] 32 32 33
《상해통원형》 제 3 조 [보상내용]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17 17 18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30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제 30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34 34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제 5 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제 6 조 [보험금의 청구]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8 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제 9 조 [주소변경의 통지]	21 21 21 22 22 22	제 31 조 [중대사유로 인한해지] 제 32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 33 조 [해약환급금] 제 34 조 [보험계약대출] 제 35 조 [배당금의지급] 제 8 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35 35 35 35 35
제 10 조 [대표자의지정] 제 4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2	제 36 조 [다수보험의 처리] 제 37 조 [연대책임]	35 36
제 11 조 [계약전 알릴 의무] 제 12 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13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4 조 [사기에 의한계약]	23 23 24 25	제 9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8 조 [분쟁의 조정] 제 39 조 [관할법원] 제 40 조 [소멸시효]	36 36 36
제 5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41 조 [약관의 해석]	36
제 15 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 15 조의 2 [보장내용 변경주기] 제 15 조의 3 [계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 16 조 [청약의 철회] 제 17 조 [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 18 조 [계약의 무효] 제 19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5 26 26 27 27 28 28	제 42 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 43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 44 조 [개인정보보호] 제 45 조 [준거법] 제 46 조 [예금보험에 의한지급보장] [별표 1] 용어의 정의	37 37 37 38 39

삼성 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기본형, 갱신형, 무배당) 약관

※ 갱신주기는 1년으로 합니다.

간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제 1 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삼성 간편실손의료비보장보험(2401)(기본형, 갱신형, 무배당)'은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상해입원형 및 상해통원형의 4 개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이들 4 개보장종목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질병입원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통 원형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단, 처방조제 제외)	
상해입원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상해통원형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단, 처방조제 제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 3 조(보상내용) 및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각 보장종목에 해당하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입원형》

제 3 조 [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 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만원과 보장 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 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치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설명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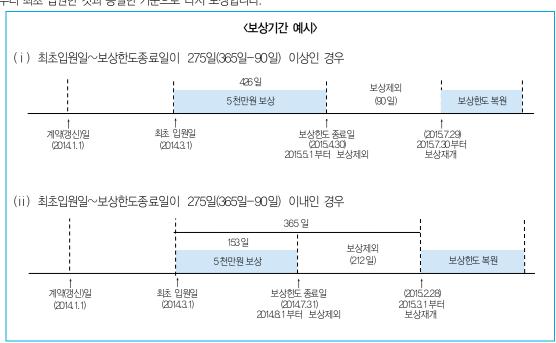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제 5 조, 제 53 조, 제 54 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 4 조, 제 15 조, 제 17 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 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 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

초 입원일부터 275 일(365 일-90 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 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80 일까지(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 3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3 항을 적용합니다.
 - 설명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이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2 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지출한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을 제 1 항에서 제 6 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제 3 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진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 3 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 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② 회사는 '제 8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 호, 2021.1.1 시행)'에 따른 다음의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9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아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 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000~099)
 - 4. 선천성 뇌질환(OOO~OO4)
 - 5. 비만(E66)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치과치료(KOO~KO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화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 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6.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 ·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9 조 제 1 항([별표 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9.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1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 3 조(보상내용) 제 1 항 및 제 3 항부터 제 6 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13. 「국민건강보험법」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14.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 15. 비급여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 16.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 17. 제 14 호, 제 15 호, 제 16 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④ 제 3 항 제 14 호에서 제 17 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질병통원형》

제 3 조 [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명목으로 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보상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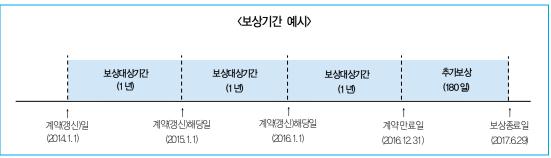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等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설명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방문 90회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이후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로 보아 제 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설명

< 제 3 조 제 3 항 예시>

피보험자가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A 의원과 B 의원에 통원하여 A 의원과 B 의원에서 "외래"로 발생한 보장대상의료비 및 공제금액이 다음 표와 같을 경우,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분	A 의원	B의원
보장대상 의료비	10 만원	50 만원
공제금액	3 만원	15 만원

- 보상금액
- : 「(10 만원+ 50 만원)— 15 만원^(주1)」과 20 만원^(주2)중 작은 금액 = 20 만원
- (주 1) 각각의 통원치료에서 발생한 공제금액 중 큰 금액
- (주2) 제1항에서 정한 보상한도
-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5 조, 제 53 조, 제 54 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 4 조, 제 15 조, 제 17 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1회당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1회당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1회당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지출한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을 제1항에서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제 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②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 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이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이래의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000~099)
 - 4. 선천성 뇌질환(OOO~OO4)
 - 5. 비만(E66)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치과치료(KOO~KO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6.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 ·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9 조 제 1 항([별표 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9.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1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 3 조(보상내용) 제 1 항부터 제 4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13.「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제 3 조의 4 에 따른 상 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15.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 16. 비급여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 17.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 18. 제 15호, 제 16호, 제 17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④ 제 3 항 제 15 호에서 제 18 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상해입원형》

제3조 [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フロ	구분 보상금액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의 뺀 금액. 다만, "10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괴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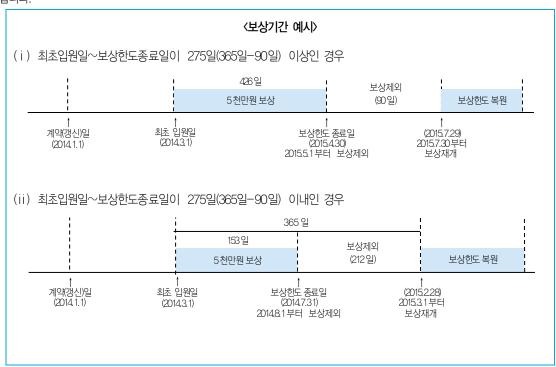
설명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5 조, 제 5 조, 제 5 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 4 조, 제 15 조, 제 17 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10 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 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80일(보험기간 만료일은 제외합니다)까지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이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지출한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을 제1항에서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제 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 3 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 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의료법」 제 2 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 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절치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10.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 3조(보상내용) 제 1 항, 제 2 항 및 제 4 항부터 제 6 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11. 「국민건강보험법」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12.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 13. 비급여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 14.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 15. 제 12호, 제 13호, 제 14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 료비
- ④ 제 3 항 제 12 호에서 제 15 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해통원형》

제3조 [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보상하며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보상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공제금액("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연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설명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방문 90회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기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이후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1회의 외래로 보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설명

〈제3조제3항예시〉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A 의원과 B 의원에 통원하여 A 의원과 B 의원에서 "외래"로 발생한 보장대상의료비 및 공제금액이 다음 표와 같을 경우,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분	A 의원	B 의원
보장대상 의료비	10 만원	50 만원
공제금액	3 만원	15 만원

- 보상금액
- : 「(10 만원+ 50 만원)— 15 만원^(주1)」과 20 만원^(주2)중 작은 금액 = 20 만원
- (주 1) 각각의 통원치료에서 발생한 공제금액 중 큰 금액
- (주2) 제1항에서 정한 보상한도
-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5 조, 제 53 조, 제 54 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 4 조, 제 15 조, 제 17 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1회당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1회당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 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1회당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지출한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을 제1항에서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이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제 3 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 3 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 2 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 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10.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 제1항부터 제4항및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11.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제 3 조의 4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13.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 14. 비급여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 15.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 16. 제 13 호, 제 14 호, 제 15 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 료비
- ④ 제 3 항 제 13 호에서 제 16 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통원의료비의 경우 통원일자별 의료비 명기 필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 서. 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 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자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용어 〈보험금 가지급제도〉

해설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하여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⑦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따른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회 사는 이를 활용한 사례를 집적하고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 2. 보험금 지급 내역
-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 5. 다수보험 가입으로 인해 비례보상된 경우 그 사유 등

제8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이 계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주소변경의 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면, 전화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계약자들이 연대(連帶)하여 부담합니다.

용어 〈 연대(連帶) 〉

해설

2 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 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제4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이하 "직업 또 는 직무의 변경"이라 합니다)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 경통지"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용어

해설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예: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합니다.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4.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 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②회사는 제1항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9조(계약내용의 변 경등)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

〈피보험자의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회사의 계 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 원인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하며 이 보험의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을 환급해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용어 〈산출방법서〉

해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한 기초서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 1 항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제 3 항에서 정한 회사의 청구금액(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상됨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 12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1 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의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설명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는 기재 하지 않아 회사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 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제5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詩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 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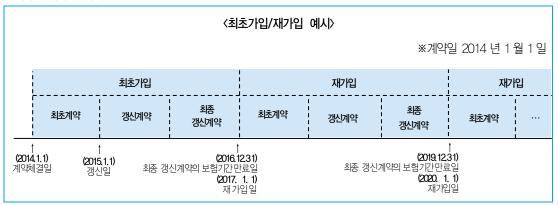
· 1 년차 이자 = <u>100 원</u> ×10% = 10 원 원금

· 2 년차 이자 = (100 원 + 10 원) ×10% = 11 원 원금 1년차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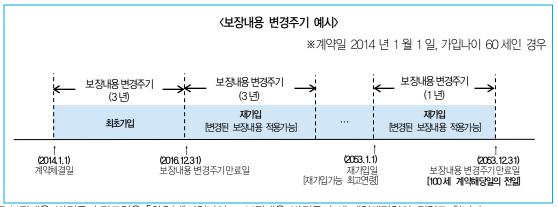
⑤ 이 계약이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성립되는 경우 "최초가입"이라 합니다.

⑥ 제 15 조의 2(보장내용 변경주기)에서 정한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 후 제 22 조(재가입)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재가입"이라 합니다.



제 15 조의 2 [보장내용 변경주기]

① 이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란 계약의 보장내용[보장내용 및 범위 등 (이하 "보장내용"이라 합니다)]이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주기를 말하며 3년으로 합니다. 다만, 재가입할 때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그 남은 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②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은 「최초(재)가입나이 + 보장내용 변경주기」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제 15 조의 3 [계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제 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 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③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최초(갱신)계약 가입나이+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을 말하며, 최종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피보험자의 「최초(재)가입나이 + 보장내용 변경주기」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④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 3 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상해입원형 및 상해통원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 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요율을 말합니다)을 적용하고, 그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⑥ 제 5 항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 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 ⑦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계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 16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 〈전문금융소비자〉

해설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 세 이상인 계약은 45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통신판매계약〉

해설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자필서명"은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2 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용어 〈법정상속인〉

해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 ⑤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18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2. 이 계약의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 보험상품"에 청약하고, 회사의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

제 19조 [계약 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 1.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방법

- 2. 계약자
- 3. 그 밖의 계약내용
-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⑤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을 말합니다.
- ④ 제 3 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보

〈보험나이〉

보험나이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서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만나이는 보험나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74년 9월 18일

예 1) 계약일:	2020년 1월 18일	예 2) 계약일:	2020년 6월 20일	
	2020년 1월 18일		2020년 6월 20일	Г
	- 1974년 9월 18일		- 1974년9월18일	
	만 45 년 4 월0일		만 45년 9월 2일	Г
	→보험나이 45세		→보험나이 46세	

제 21 조 [계약의 소멸

-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계약자에게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포함)을 지급합니다.
- ②제 1 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실종선고〉

해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 1 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청구) 제 1 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22 조 [재가입]

- ① 회사는 최초가입시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후 재가입할 때 인수조건(재가입가능 최고연령 등)을 설명해야 하고, 이 계약의 재가입 시점에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특히, 재가입 시점에 보장내용이 축소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② 계약이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제 6 항에 따라 재가입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 15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17 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의 조항을 준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이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이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간편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④ 재가입 계약의 보험료는 재가입일(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상해입원형 및 상해통원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요율을 말합니다)을 적용하고, 그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재가입시 보장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특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2회 이상에 걸쳐 계약자에게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안내하며,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 ⑥ 계약자는 제 5 항에 따른 재가입안내와 재가입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⑦ 제 5 항 및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연장합니다.
- ⑧ 제 7 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계약자는 그 연장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된 날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⑨ 제 7 항에 따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보험계약의 연장일은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계약자 등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연락이 닿아 회사가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확인한 날 등)까지로 합니다. 계약자의 재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 2 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 날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 ① 제 9 항 또는 제 10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33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제 23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 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용어 〈보장개시일〉

해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 드립니다.
-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 24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용어 〈납입기일〉

해설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 25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계약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2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 2 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33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 〈납입최고(독촉)〉

해설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 2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약한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4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5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23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 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및 이전의 모든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제 11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제 12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13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용어 〈부활(효력회복)〉

해설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의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 28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19조(계약내용의 변경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용어〈강제집행〉

해설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이 지나 보험수 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보험료의 계산]

①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상해입원형 및 상해통원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요율을 말합니다)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②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매년 최대 25%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 조항에 따른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 ▶ 최초 보험료, xx세 남자, 월 14,000원, 매년 보험료* 최대인상(25%) 가정시
- *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을 함께 가입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입니다.

(단위 : 원)

구분	xx세	xx+1세	xx+2세	xx +3세
나이증가분(A)		560	728	946
보험료 산출 기초율 (위험률 등) 증가분 (B=전년도기준보험료의최대 25% 기정)		3,640	4,732	6,152
기준보험료 (C=전년도 기준보험료 +A+B)	14,000	18,200	23,660	30,758

^{*} 상기 보험료계산 예시는 단순예시로, 실제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 7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30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 33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약환급금)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3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32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제 1 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 33 조(해약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3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계약은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단, 계약이 해지된 시점에 산출방법서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 항에 따른 금액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제 30 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미경과 보험료 포함)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 34 조 [보험계약대출]

이 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제 35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8 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 36 조 [다수보험의 처리]

-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 ②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 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이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설명

각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용어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

해설

입원보장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에서 회사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통원보장의 경우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제 37 조 [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9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8 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 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 39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설명

〈소멸시효〉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2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월 2일까지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용어 〈신의성실의 원칙〉

해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②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3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

해설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④ 회사가 제 17 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 6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⑤ 회사가 제 4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제 44 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5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6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 〈예금자보호법〉

해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 1 <u>용어의 정의</u>

용어	정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보험연도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됩니다.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다만,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연계약해당일로 말합니다.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예시) 계약일이 2020년 2월 29일인 경우 차년도 연계약해당일은 2021년 2월 28일입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최초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평균 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 가능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최초계약	최초(재)가입으로 성립된 보험계약	
갱신계약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15조의3(계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	
갱신 전 계약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	
재가입 계약	제 15 조의 2(보장내용 변경주기)에서 정한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 후 제 22 조(재가입)에 따라 성립된 계약	
갱신일	갱신 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a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의료법」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약사	「약사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	
의료기관	이래 각호의 의료기관 1.「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동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국	「약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 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 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료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외래수술비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처방조제비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밖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 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장대상의료비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보장제외금액 [*] * 제2관[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비급여 병실료 중 회사 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상급병실료 치액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보장책임액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 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 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주)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체외충격파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 품분류표에 따릅니다.
항생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
(항진균제 포함)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자기공명영상진단	(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릅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0율
보장관련 보험금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0율 + 7년0 율(4.0%)
<u> </u>	지급기일의 61 일 이후부터 9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7년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7년이율(80%)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지급이자도 소멸시효(제 40 조)가 적용됩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기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 탑승부담보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적용하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또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회사가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詩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은 "해당 계약"이라 합니다).
- ② 이미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또는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회사가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도,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약을 부가하여 해당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 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 계약의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⑤ '해당 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 탑승 중 보험사고에 대한 부담보]

- ① 회사는 해당 계약의 약관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및 규칙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 함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 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④ 제1항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19호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합니다.
 - 설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합니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⑤ 제2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1항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제외합니다.
- ⑥ 제2항에서 제4항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정의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⑦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지의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 [해당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 이 특약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일 경우 해당 법에서 정한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와 같습니다.

제 1 조 [특약의 적용범위 등]

- ① 이 특약은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청약(壽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이하 "장애인전용보험"이라 합니다)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1. 「소득세법 제 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용어

〈소득세법 제 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해설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 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보험료별로그합계액이 각각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 1 호에 따른 장애인전 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cdot 공제로서 보험 \cdot 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 \cdot 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cdot 공제로 표시된 보험 \cdot 공제의 보험료 \cdot 공제료를 말한다.
- ②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1 조의 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4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주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부가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장애인의 범위) 제 1 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다만,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 등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장애인의 범위) 제 1 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어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 ① 소득세법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3. 삭제
- 4. 제 1호 및 제 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4 조(장애이동의 범위 등) 〉

-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 동 복지지원법」 제 21 조 제 1 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같은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설명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주계약의 피보험자 1 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 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주계약의 보험수익자 1 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 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주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주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 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傷痍者)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 1 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3 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2 조(제출서류)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③「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등) 제 1 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제 1 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 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설명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 4 조(전환 해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 2 조(제출서류)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 명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설명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에 장애예상 기간(또는 장애기간)이 2019년 12월 1일까지 인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2019년 6월 1일 \sim 2019년 12월 1일)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지난 후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⑥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 4 조(전환 해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 범위 등)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2 조(제출서류)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전환 해지]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 이 특약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가 미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변경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적용 대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라 합니다)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詩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 1조(적용대상)의 주계약 및 특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변경지정) 및 자격]

-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3촌이내 친족」중 1명으로 합니다.
- ③ 보험금 청구 시에 지정대리청구인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④ 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변경지정) 신청서(회사양식)
 - 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계약 청약서에 포함된 신청양식으로 대체합니다.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단, 계약체결시점 또는 계약체결이후 지정대리청구인을 최초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 ⑤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 본인이 아닌 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제 1 항에서 제 4 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의 대리신청"이라 합니다) 계약자가 작성한 제 4 항 제 1 호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및 제 4 항 제 2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계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계약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⑥ 제 1 항에서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 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⑦ 제 1 항에서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또는 특약 약관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 특약에서도 그 기간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기타사항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가나다 순)

- □ 아래 법령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래 법령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법령의 제·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을 적용합니다.
- □ 또한, 아래 방법으로 현행 법령과 제·개정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앱: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앱을 다운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앱	아이폰용 QR 코드	안드로이드용 QR코드
국가법령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제 1 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키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 2 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 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나. 수두(水痘)다. 홍역(紅疫)라. 콜레라마. 장티푸스바. 파라티푸스사. 세균성이질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자. A 형간염차. 백일해(百日咳)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 감염증
 서. E 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4. "제 3 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 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 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나. B 형간염다. 일본뇌염라. C 형간염마. 말라리아바. 레지오넬라증사. 비브리오패혈증아. 발진티푸스자. 발진열(發疹熱)차. 쯔쯔가무시증카. 렙토스피라증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머. 큐열(Q 熱)버. 웨스트나일열서. 라임병어. 진드기매개뇌염저. 유비저(類鼻疽)처. 치쿤구니야열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이하 생략)

제 16 조의 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있다.

- 1. 질병관리청
- 2. 질병대응센터
-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4.「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5.「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 7.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 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생략)

⑤ 법 제 11 조제 6 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은 별표 2 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 1. 제 1 급감염병의 경우
 -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 2 급감염병의 경우

-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뇌척수액, 가래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 3 급감염병의 경우

-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뇌척수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다만, 파상품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감염병환자로 진단한다.
-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제4급감염병의 경우

-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인두도말, 궤양부위도말, 병변조직, 피하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7 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 및 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불이익의 내용
- ③ 삭제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 22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2. 제 1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3. 제 18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4. 제 19 조제 1 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5. 제 2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6. 제 2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 30 조제 2 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삭제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 1 항제 3 호 및 제 7 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삭제
- ⑦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 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 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 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 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 4 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24 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 24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4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 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 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 · 1 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1월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 6.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8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8.6월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 월 25 일(기독탄신일)
- 10 의 2. 「공직선거법」제 34 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 3 조(대체공휴일)

- ① 제 2 조제 2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 2 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1. 제 2 조제 2 호·제 6 호·제 7 호 또는 제 10 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 제 2 조제 4 호 또는 제 9 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3. 제 2 조제 2 호·제 4 호·제 6 호·제 7 호·제 9 호 또는 제 10 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 2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제 1 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 「국가보훈 기본법」제 23 조제 1 항제 3 호의 2 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 조 또는 제 5 조에 따른 요 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 4 조제 1 항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 제 8 호, 제 14 호 및 제 15 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 3 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 74 조 의 5 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 4 조제 1 항 각 호(제 1 호, 제 2 호 및 제 10 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⑥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 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병역법」,「군인사법」 또는「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생략)

-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 5. 건성습진(乾性濕疹)
 -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 7. 뇌경색증(脳硬塞症)
 -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 11. 근질환(筋疾患)
 -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14. 갑상샘기능저하증
 - 15. 고혈압(高血壓)
 - 16. 뇌출혈(腦出血)
 - 17. 삭제
 -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 20. 고지혈증(高脂血症)
- 21. 삭제
- (이하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요양급여)

-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진찰 · 검사
 - 2. 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 ·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4. 예방 · 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移送)
- ②제 1 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 1 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 1 항제 2 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 4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 2. 제 1 항제 2 호의 약제: 제 41 조의 3 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③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2 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3. 「약사법」제 91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
 -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 1. 제 2 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 2 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 2 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 41 조제 3 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 45 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 ⑤제 1항·제 2항 및 제 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44 조(비용의 일부부담)

-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 ④ 제 2 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 3 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3 조(급여의 제한)

-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55 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으
 -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 69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
 - 2. 제 69 조제 5 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 ④ 공단은 제 7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 69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 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제 3 항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제 82 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 82 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제 1 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 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4 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3호 및 제 4호의 경우에는 제 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삭제
-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3. 제 6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 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 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 가. (생략)
 -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 60/100.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 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1 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100으로 한다.
상급종합 병원 명원		의약분업 예외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진찰료 총액) × 60/100 + 약값 총액 × 30/100.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 + 약값 총액×30/100, 1 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20/100 + 약값 총액×21/100 로 한다.
	_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 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종합병원	동 지역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 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30/100(1 세 미만 영유아 의 경우에는 21/100)
	0 ==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 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읍·면 징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값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30/100, 1 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30/100(1 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병원, 치괴병원,	ᅛ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 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지역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 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30/100(1 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이. 면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읍·면 지역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 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30/100(1 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의원, 국민이의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5/100).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모든지역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1세미만영유아외래진료의경우에는 5/100) + 약값총액 × 30/100(1세미만영유아의경우에는 21/100). 데 미만영유아의경우에는 21/100).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별표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

-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을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2023 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표에 따른 금액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120일초과입원	그밖의경우
	1구간	134 만원	87 만원
자역가입자, 직장가입자및 피부양자	2구간	168 만원	108만원
	3구간	227 만원	162만원
	4구간	375 만원	303 만원
	5구간	538만원	414 만원

6구간	646 만원	497 만원
7구간	1,014 만원	780 만원

비고:위표에서 "120일 초과 입원"이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4 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비고

- 1. 위 계산식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말한다.
- 2. 위계산식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하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 3. 위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1 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2. 제 1 호의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구간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1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2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3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4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5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6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7구간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비고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 32 조제 2 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위표에 도 불구하고 1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 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① (생략)
- ② 제 1 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조혈모세포이식 및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각각 고시한다.
- ④ (생략)

제 5 조의 2(중증질환심의위원회)

①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제 9 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 41 조제 4 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 와 같다

[별표2] 비급여대상

-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 ·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라. 단순 코골음
 -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이하 생략)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8. (생략)
-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 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생략)

제 42 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 36 조제 6 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 36 조제 3 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 36 조제 5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 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 47 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 17 조제 3 항, 제 18 조제 2 항, 제 19 조제 1 항 · 제 3 항, 제 20 조제 1 항 또는 제 21 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 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③ (생략)
- ④ 법 제 47 조제 2 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 31 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 15 조(등급판정 등)

(생략)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 12 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 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생략)

-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 14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 4 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 2 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 23 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아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항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 24 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제 25 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가병비: 제 26 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이하 생략)

제 29 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조사나 제 60 조 또는 제 61 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 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 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한국표준질병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사인분류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160

	사. 뇌내출혈	l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62
	자. 뇌경색증	1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1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ਨੁੱਲ ਕ੍ਰੈਨੂ	U23.4
	서. 진전(震顫)	R25.1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처. 다발경화증	G35
.1 —		

비고

-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 22 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 · 사인 분류에 따른다.
-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있다.
- ③ 삭제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 1항과 같다.

제 28 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 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7 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 와 같다.
- ② (생략)
- ③ 제 2 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1.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구분 과적면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간도)			
	구분 과절명	측정부위	7개드)

	ı	T		
	목뼈부(경추부)	후두과(後頭顆: 뒤통수 관절융건 목뼈1번-목뼈2번 분절 목뼈2번-목뼈3번 분절 목뼈3번-목뼈4번 분절 목뼈4번-목뼈5번 분절 목뼈5번-목뼈6번 분절 목뼈6번-목뼈7번 분절 목뼈7번-등뼈1번 분절	기)-목뼈1번 분절	13 10 8 13 12 17 16 6
척주 등뼈부(흉추부)		등뼈1번-등뼈2번 분절 등뼈2번-등뼈3번 분절 등뼈3번-등뼈4번 분절 등뼈4번-등뼈5번 분절 등뼈5번-등뼈6번 분절 등뼈6번-등뼈7번 분절 등뼈7번-등뼈8번 분절 등뼈8번-등뼈9번 분절 등뼈9번-등뼈10번 분절 등뼈10번-등뼈11번 분절 등뼈11번-등뼈12번 분절		4 4 4 4 5 6 6 6 9
허리뼈부(요추부)		등뼈12번-허리뼈1번 분절 허리뼈1번-허리뼈2번 분절 허리뼈2번-허리뼈3번 분절 허리뼈3번-허리뼈4번 분절 허리뼈4번-허리뼈5번 분절 허리뼈5번-엉치뼈1번 분절		12 12 14 15 17 20
어깨관절		앞위쪽올리기 옆위쪽올리기 뒤쪽올리기 모으기 안쪽 돌리기 바깥쪽 돌리기		150 150 40 30 40 90
팔꿈치관절		평기 굽히기 안쪽 돌리기 바깥쪽 돌리기		0 150 80 80
손목관절		손등쪽 굽히기 손바닥쪽 굽히기 손목의 요골(橈骨: 노뼈)쪽 굽히 손목의 척골(尺骨: 자뼈)쪽 굽히		60 70 20 30
손허리손가락관절 (중수지관절)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0 60
	(0 1 12 2)	둘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가운데손가락	펴기	0
		급히기 펴기	90
	넷째 손가락	퍼기 굽히기	90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90
손가락관절	엄지손가락	펴기 굽히기	0 80
	둘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제1손가락관절	가운데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	넷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100
	둘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제2손가락관절 (끝쪽 손가락뼈마디관절)	가운데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넷째 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새끼손가락	펴기 굽히기	0 70
엉덩관절	평기 굽히기 모으기 벌리기(외전) 안쪽 돌리기 바깥쪽 돌리기		30 100 20 40 40 50
무릎관절	펴기 굽히기		0 150
발목관절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바깥쪽 뒤집기 안쪽 뒤집기		20 40 20 30
발허리발가락관절 (중족지관절)	엄지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50 30
(중축시선걸)	둘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40

		발바닥쪽 굽히기	30
	가운데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30 20
	넷째 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20 10
	새끼발가락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10 10
발가락관절	엄지발가락	펴기 0 굽히기 30	
제1발가락관절 (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둘째 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가운데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넷째 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새끼발가락	펴기 굽히기	0 40

■ 상법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시행령

제 44 조의 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 · 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 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 ·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①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 과반환금
 -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 천징수된 소득
 -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 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10. 삭제

(이하 생략)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0. (생략)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이하 생략)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이하	총연금액		
350만원초과	350만원		
700만원이하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초과	490만원		
1400만원이하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초과	630만원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

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 5.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소득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 ③「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천재지변
 -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

은경우

-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 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기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 개계약
 -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라.「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 1.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가. 연간 1천800만원
 -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

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 4)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5)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 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11 — 연금수령연차)	×	100

-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 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 2.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 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1.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 ⑨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관련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수익"이라 한다)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았더라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즉시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청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주택차액 납입금과 운용수익 잔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받은 운용수익은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법 제14조에 따라 합산한다.
- ① 1주택을 둘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2)를 적용한다.
- ②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같은 목 4)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 2. 이연퇴직소득
 -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②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 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사하여야 한다.
-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 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가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 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 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 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 회 또는 월 2 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 9 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생략)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 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하 생략)

제 33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 제 1 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 32 조 제 6 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 32 조 제 1 항 각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제 32 조제 1 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 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하 생략)

제 28 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법 제 33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각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1. 「보험업법」제 $2 \times 2 \times 16$ 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2 \times 16 \times 16$ 때은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제 $11 \times 16 \times 16$ 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 $2 \times 16 \times 16 \times 16$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이하 생략)

■ 약사법

제 2 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4. "의약품"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 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 5.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 35 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 \cdot 군수 \cdot 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 별표 1 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2. 제 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 18 조의 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 31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 의료급여법

제 7 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찰 · 검사
 - 2. 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4. 예방 · 재활
 - 5. 입원
 - 6. 가호
 -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② 제 1 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10 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 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 15 조(의료급여의 제한)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17 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 13조(급여비용의 부담)

- ① 법 제 10 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 1. 삭제
 - 2. 삭제
- ② 삭제
-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 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④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 ⑤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 1 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 2 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 3 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 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1 종수급권자 : 2 만원 2. 2 종수급권자 : 20 만원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 5 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괴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1. 1 종수급권자 : 매 30 일간 5 만원
 - 2.2 종수급권자: 연간 80 만원.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 6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 1. 1 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 기관	<u>'</u>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1) 법 제9조 제2항제 1호가목 에 해당 하는 제1 차의료급 여기관	가) 외래 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 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및 같은 호 나목 의 제1차 의료급여 기관 중 보건의료 원		(2)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 공명영상진단(MRI), 양전 지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약 제(이하 "약제"라 한다)는 급여	
		(3)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 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나) 입원진료		급여비용총액 전부	
2) 법 제9조 제2항제 2호에 따른 제 2차의료 급여기 관	가) 외래 진료	(1)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 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 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 는 경우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	
		(2)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 공명영상진단(MRI), 양전 지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다만, 약제는 급여비용총액에서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3)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 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나) 입원진료		급여비용총액 전부	
3) 법 제9조 제2항제 3호에 따른 제 3차의료 급여기 관	가) 외래 진료	(1)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 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 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 는 경우	관 1회 방문당 2,500원의 본인	

		(2) 전산화단층촬영(CT), 자 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등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 료	다만, 약제는 급여비용총액에서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3)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2,000원의 본인부담금 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나) 입원진료		급여비용총액 전부
4) 법 제9조 제2항제 1호의 제1차의 료급여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 료소	외래 · 입원진료		급여비용총액 전부
5) 법 제9조 제2항제 1호의 제	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 전부
1호의 제 1차의료 급여기관 중 약국 및 한국 희귀의약 품센터	나)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에서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 여비용 전부
		사법」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처 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에서 약국 1회 방문 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비고:위표 1)가)(1), 2)가)(1) 및 3)가)(1)의 경우로서 처방전을 함께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위표 1)가)(3), 2) 가)(3) 및 3)가)(3)의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중략)

- 라. 가목 1)부터 4)까지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 마. 가목 1)부터 4)까지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중략)

- 2.2 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	------------------------

1) 법 제9조제2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 차의료급여기 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가) 외래 진료	(1)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 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 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 는 경우	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2)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 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 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진료	만, 약제는 급여비용총액에서 구입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		
		(3)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 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 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나) 입원진료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 다만, 약제는 급여비용총액에서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로 한다.		
2) 법 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 기관	지부장	(1)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 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 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 하는 경우			
		질환의 외래진	질환의 외래진		
		(3) 그 밖의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 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 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나) 그 밖의 9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급여비용총액에서 구입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로 한다.		
	다) 입원진료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 다만, 약제는 급여비용총액에서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로 한다.
3) 법 제9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 기관	가) 외래진료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급여비용총액에서 구입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로 한다.
	나) 입원진료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 다만, 약제는 급여비용총액에서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로 한다.
4) 법 제9조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소·보 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급여비용총액 전부
5) 법 제9조제2항 제1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약국 및 한 국희귀의약품 센터	가)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 전부
	나)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발행한 처방전 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에서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 여비용 전부
	다) 약사가「약사법」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에서 약국 1회 방문 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비고:위표 1)가)(1) 및 2)가)(1)의 경우로서 처방전을 함께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위표 1)가)(3) 및 2)가)(3)의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중략)

- 마. 가목 1)부터 4)까지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 바. 가목 1)부터 4)까지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중략)

- 3. 제 1호 및 제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 4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을 의료급 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 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정신병원·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1) 상급종합병원 2 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3 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 2)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2 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3 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 다. 법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 1 호가목 4) 및 제 2 호가목 4)의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외래·입원진료와 제 1 호가목 5)가) 및 제 2 호가목 5)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 1)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 2)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 3) 제 1 호가목 5)나) · 다) 및 제 2 호가목 5)나) · 다)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70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 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 1) 1 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
 - 2) 2 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의료법

제 2 조(의료인)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 80 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 3 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워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의료 기관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3 조의 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 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이청소년과·산부인과 중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무의를 둘것
 - 3. 300 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를 둘 것
- ② 종합법원은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 \cdot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 3 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 77 조제 1 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 1 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 년마다 제 2 항에 따른 평기를 실 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 9 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외국의 제 1 호나 제 2 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 9 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 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 33 조(개설 등)

-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2. 화자나 화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제 54 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 1호 또는 제 2호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 1. 제 28 조제 1 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하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 24 조(가정간호)

- ①법제33조제1항제4호에따라의료기관이실시하는가정간호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 1 가호
 -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 3. 투약
 - 4. 주사
 -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6. 상담
 -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 34 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제 36 조제 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 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 와같다.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 상인 종합 병원만 해 당한다)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생략)

2. 중화자실

- 가. 병상이 300 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 개당 면적은 15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이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이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 개당 면적은 5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 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는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 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 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 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이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 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이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 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 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 개당 1 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 개당 1 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8 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마다 1회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88 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 189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 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 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① (생략)

②법 제 89 조제 1 항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 265 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⑥ (생략)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 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 전자서명법

제 2 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기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다.
 -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88 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 89 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65 세 이상인 거주자
- 2.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수급자
-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2 호에 따른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
- ② 삭제
-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기입절차, 기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 10 조(보건소의 설치)

-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있다.

제 12 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있다.

제 13 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초 · 중등교육법

제 2 조(학교의 종류)

-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초등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폭행 등)

- ① 삭제
- ②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1. 「형법」제 260 조제 1 항(폭행), 제 283 조제 1 항(협박), 제 319 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 366 조(재물손괴 등)의 죄
- 2. 「형법」 제 260 조제 2 항(존속폭행), 제 276 조제 1 항(체포, 감금), 제 283 조제 2 항(존속협박) 또는 제 324 조제 1 항(강요)의 죄
- 3. 「형법」제 257 조제 1 항(상해) · 제 2 항(존속상해), 제 276 조제 2 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 350 조(공갈)의 죄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 2항 각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제 2 항제 1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 년 이하의 징역
 - 2. 제 2 항제 2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 3. 제 2 항제 3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 ④ 제 2 항과 제 3 항의 경우에는 「형법」제 260 조제 3 항 및 제 283 조제 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집단적 폭행 등)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이 법(「형법」 각해당 조항 및 각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형법」 제 261 조(특수폭행) (제 260 조제 1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284 조(특수협박) (제 283 조제 1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320 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 369 조제 1 항(특수손과)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 2. 「형법」 제 261 조(특수폭행)(제 260 조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278 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 27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284 조(특수협박)(제 283 조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 324 조제 2 항(강요)의 죄: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 3. 「형법」제 258 조의 2 제 1 항(특수상해), 제 278 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 276 조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 정한다) 또는 제 350 조의 2(특수공갈)의 죄: 3 년 이상 25 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 250 조(살인,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251 조(영이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52 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 1 항의 형에 처한다.

제 253 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 250 조의 예에 의한다.

(중략)

제 257 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전 2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58 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의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제 259 조(상해치사)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260 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61 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62 조(폭행치사상)

제 260 조와 제 261 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 257 조부터 제 259 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중략)

제 287 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88 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 2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 289 조(인신매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 3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 290 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 치상)

- ①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91 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 치사)

- ①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292 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 은닉 등)

- ①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 1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제 297 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97 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기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략)

제 299 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중략)

제 333 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34 조(특수강도)

- ① 아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 333 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335 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 333 조 및 제 334 조의 예에 따른다.

제 336 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하 생략)

■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생략)
 - 3. "말기환자(末期患者)" 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마. (삭제)

- 4. "연명의료" 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하 생략)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4 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 7 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 $5 \cdot 18$ 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1.5 \cdot 18$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 \cdot 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 2. $5 \cdot 18$ 민주화운동부상자: $5 \cdot 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 \cdot 18$ 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제 5 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 3.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